기초학력 보장법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8

발의연월일: 2020. 6. 18.

발 의 자: 박홍근·천준호·김경만

이정문 • 안민석 • 기동민

김병기 · 이학영 · 윤관석

윤호중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향유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임.

그러나, 지난 2016년 말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 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5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영역에서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 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 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기초학력 보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 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각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 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보 조인력의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 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 4.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 5.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 6.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초학력진단)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 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 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 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 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전문 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 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 장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